

'산업재산권 진단기관' 지정 및 실적보고 쉬워진다

- 「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'24.5.30. 시행) -
- 진단기관의 개선 요청 반영해 지정요건 완화 및 실적보고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-

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·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(이하 진단기관)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「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5. 30.(목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】

'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·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*(現 269개)'으로,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·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** 받을 수 있다.

* (現) 발명진흥법 제36조(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) → ('24.8.7 이후)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(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)

*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사목(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 조사·분석비용)

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'진단기관 간담회'에서 진단기관이 요청한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개정된 규정에서는 ▲ (지정요건)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·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하여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▲ (실적보고)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 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부담을 완화한다.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(10월 예정)에 반영될 예정이다.

또한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'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'에 실적보고 기능*을 추가하였다. 그동안은 매년 시행되는 '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실적조사'를 위해 개별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(<https://biz.kista.re.kr/ipams/>) 로그인-메인페이지 실적보고 배너

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진단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민간 산업재산 조사·분석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·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1.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 메인화면

2. 「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주요 개정사항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	책임자	과 장	신원혜 (042-481-8254)
	산업재산창출전략팀	담당자	주무관	구자훈 (042-481-5059)

IEPMS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

Institutions for Examin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System

로그인

회원가입

기관등록신청

안내

모집공고

교육

공지사항

자료실



진단기관 명단

기관명

주소

=전체=

Q

전체보기

아이디 휴대폰 인증 I-PIN 인증

아이디

비밀번호

☐ 아이디저장

로그인

회원가입 | 아이디 찾기 | 비밀번호 재설정

IEPMS
사업안내

운영규정
지정요건

공지사항

자료실

+ 더보기

□ 개정 이유

- 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보안장비, 제한구역 지정 등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영부담을 경감해달라는 외부의견을 반영할 필요
- 진단기관 실적보고 제출기한 연장 및 실적 작성 항목 현행화를 통해 진단기관의 실적제출 부담을 경감할 필요

□ 주요 개정 내용

- 보안요건 완화
 - (관리요건) 보안 전담조직 구비요건 완화*, 보안감사 시행의무 폐지
 - * ‘보안 전담조직 구성’ → ‘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’
 - (물리요건) 출입기록 작성의무 폐지, 점검항목 용어 통일*
 - * ‘작업장’, ‘제한구역’, ‘전용 사무실’ → ‘전용 업무공간’
 - (기술요건) 기술적 보안 조치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*, 점검항목 명확화
 - * 침입차단·탐지시스템 → 외부로부터 업무환경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통제솔루션 (NW방화벽, PC방화벽, UTM(Unified Threat Management), NAC(Network Access Control) 등)
- 실적 제출기한 연장(2월말 → 6월30일) 및 실적보고서 양식 내 실적보고와 무관한 항목* 삭제 및 실적 작성표** 마련
 - *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진단기관의 일반현황(전문인력, 시설 및 보안체계 현황 등)
 - ** 지정 기술분야별·기업유형별 특허 조사·분석 수행건수, 내용, 금액 등